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정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0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4.

발 의 자 : 황정아 · 장종태 · 박용갑
김우영 · 장철민 · 민홍철
황명선 · 한민수 · 전용기
노종면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되면 중소기업 당시 제공받던 세제 혜택을 소멸시키므로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한 비용을 더 크게 만들어 기업들의 성장 유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지방의 균형발전과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병목 해소를 위하여 본사를 비수도권에 둔 기업의 경우,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되더라도 기존 중소기업이 받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한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

경우,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10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, 즉 ‘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’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5 신설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1절에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5(비수도권 중소기업 유예에 관한 특례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10개 과세연도까지(이하 이 조에서 “유예기간”이라 한다)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,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. 다만, 해당 유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둘 것
2.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한 총투자액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한 총투자액보다 많을 것
3.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총고용인원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총고용인원보다 많을 것

② 제1항에 따른 총투자액의 범위 및 계산방법, 총고용인원의 산정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비수도권 중소기업 유예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5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5(비수도권 중소기업 유</u> <u>예에 관한 특례) ① 다음 각</u> <u>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</u> <u>업이 매출액 증가 등 대통령령</u> <u>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</u> <u>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</u> <u>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</u> <u>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</u> <u>그 다음 10개 과세연도까지(이</u> <u>하 이 조에서 “유예기간”이라</u> <u>한다)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</u> <u>고,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에</u> <u>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. 다</u> <u>만, 해당 유예기간 중 다음 각</u> <u>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</u> <u>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<u>1.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사 또</u> <u>는 주사무소를 둘 것</u> <u>2.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수도</u> <u>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사업</u> <u>장에 대한 총투자액이 수도권</u> <u>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한</u> <u>총투자액보다 많을 것</u>

3.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총고용인원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총고용인원보다 많을 것

② 제1항에 따른 총투자액의 범위 및 계산방법, 총고용인원의 산정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